#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30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 사 경 과
근로 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2200205	임이자의원	2024. 6. 7.	
	2200123	서범수의원	2024. 6. 4.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
	2200175	임이자의원	2024. 6. 5.	의(2024.9.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
	2200303	박해철의원	2024. 6. 11.	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200378	이수진의원	2024. 6. 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1.) 상정 후
	2200588	김희정의원	2024. 6. 18.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 <sup>호</sup> 축조심사
	2200757	김정재의원	2024. 6. 20.	
	2201387	박정의원	2024. 7. 4.	
	2202059	박정의원	2024. 7. 22.	
	2202568	박홍배의원	2024.8.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
	2202572	황정아의원	2024. 8. 5.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9.11.)
	2202791	이용우의원	2024.8.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
	2202965	김주영의원	2024. 8. 20.	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1.) 상기후 축조심사

의안명	의 안 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 사 경 과
	2203246	이수진의원	2024.8.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
	2203444	김주영의원	2024.8.30.	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9.12.) 상정 후 축조심사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 위원회(2024. 9. 12)에서 이상 1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 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4. 9. 12)는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재직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 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 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고자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등 임산부를 보호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 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 나.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 라.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 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 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6 신설).
- 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표 체불사업주 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 사.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원에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8

신설).

- 아.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60조제6항).
- 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100일을 주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7항).
- 차.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 카. 명단공표 체불사업주가 명단공표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 4. 부대의견

- 가. 국회와 정부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제재조치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원과 예산을 책임지고 해결한다.
- 나.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체불사업주 제 재조치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입법 보완 방안을 마련 한다.

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제외가 임금체불 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입법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로한다.

-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제3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 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 중 "공개 여부를"을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로 한다.

제43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의3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 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 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 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 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 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 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등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

제나 수급 제한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④ 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 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의 산정, 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 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

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 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의7(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 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 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임금등의 체불 기간 · 경위 · 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 4. 사업주의 재산상태

제60조제6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제74조제1항 전단 중 "(한"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36주"를 "32주"로, "근로자"를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로 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 고자료
  -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제10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60조제6항의 개정규정 : 공포한 날
- 2. 제74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 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횟수 및 체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 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를 정 하는 경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간 체불횟수와 체불액은 이 법 시행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 제4조(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한다.
- 제5조(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개

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 이자) ① ---- 다음 각 호의 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 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 른 날까지 -----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 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 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 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 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아니하다.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 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 금, 보상금, <u>수당, 그 밖의</u>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 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 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 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 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 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 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 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①
<u>수당,</u>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

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u>공개 여부</u> 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u>이하 이 조에서</u>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 <u>이하 이 조 및 제43</u> 조의4
에서
<u>.</u>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저 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25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 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 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 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 (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 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의 사망 · 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으로	<u>.</u> 본	다
--	----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세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 ①
<u>다</u>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

러하지 아니하다. <<u>신</u>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 업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있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
   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등이 다음 각 호의조치를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

 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

 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불이익 조치
- ④ 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 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 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 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u>준용한다.</u>
- 6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의 산정, 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 등에

<신 설>

<신 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 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 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 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 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 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 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 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 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
  - 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 득에 관한 자료
-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 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 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

<u><신 설></u>

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
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
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
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
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의7(출국금지)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 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 <신 설>

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 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경우
  -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생 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 으로 본다.

1. ~ 3. (생략) <신 설>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 금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 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임금등의 체불 기간・경위・ 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 급액
- 4. 사업주의 재산상태
-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 <신 설>

### ⑦ (생략)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되어야 한다.

## ② ~ ⑥ (생 략)

①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 내 또는 <u>36주</u> 이후에 있는 여 성 <u>근로자</u>가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 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u> </u>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п]
_ <del></del>
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u>한</u>
<u>하고, 미숙아의 범위,</u>
휴가 부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u>32주</u>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
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을 허용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u><신 설></u>

•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
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 료
-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 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 또는 자료

### 제109조(벌칙) ① (생 략)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 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 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 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 료 등을 면제한다.

제10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03年(宣河	) <u>(</u>	11 8 4	(百)
②			
		<u>t</u>	구만, 제
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